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원상표가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여 상표등록의 거절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출원상표의 상표등록에 동의를 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19809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등록의 분할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 25. ~ 3.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음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보정 또는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보정, 지정기간 연장신청 또는 분할 신청”으로, “보정서 또는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보정서,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로 한다.

제2장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상표등록 동의서의 제출) ① 출원인이 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아 상표 등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가.
 - 가. 법 제55조제1항 후단 및 제87조제2항에 따른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나.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 다. 법 제116조에 따른 심판에 대한 의견서 제출(법 제14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및 제147조에 따라 제출하는 의견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

가. 법 제36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

나. 법 제44조에 따른 상표등록 변경출원

다. 법 제45조에 따른 상표등록 분할출원

라.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상표등록 분할이전출원

마. 법 제86조에 따른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바. 법 제205조 및 제206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

3. 법 제116조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

②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그 내용을 보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호의2·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기간

2.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

3. 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6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날부터 법 제149조제3항에 따른 심리 종결의 통지를 한 날까지

4.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0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

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각각의 기간

5.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
제3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상표권자(상표권이 공유인 경
우 각 공유자도 상표권자로 본다)”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
다.

제87조의2의 제목 “(소리·냄새상표의 파일 또는 견본의 제출 등)”을
“(국제상표등록출원 등 절차의 보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
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88조의2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또는 제91조의2
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특허청장은 제88조의2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또는
제91조의2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에 대하여 법 제39
조에 따른 보정을 명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제88조의2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또는 제91조의2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에 대하여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 제27조의2(3)에 따라 국제사무국이 하자를 통지한 경우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도록 해야 한다.

제88조의2 및 제9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 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분할하려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함께 보정해야 한다.

1.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국제등록의 분할 신청서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91조의2(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을 지정상품별로 분할하려는 상표권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국제등록의 분할 신청서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별지 제2호서식의 뒤쪽의 기재요령 제8호가목4)를 5)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또는 제35조제6항에 따른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동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동의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1.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권의 등록번호 또는 선출원상표의 출원번호
2. 출원상표의 출원번호(또는 출원상표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등록에 동의하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범위
4.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권(또는 선출원상표) 및 동의에 의해 등록되는 출원상표는 모두 등록원부에 공존동 의와 관련된 등록상표임이 표기된다는 사실의 확인
5.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권자 또는 선출원인의 성명 및 서명(날인)
6. 출원인의 성명 및 서명(날인)

※ 상표공존동의서 작성예시

상표공존동의서		
출원인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특허고객번호	(특허고객번호가 없을 시, 사유 기재)
	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	(출원번호가 없을 시, 상표견본 및 상품류 기재)
<p style="text-align: center;">아래 선등록(출원) 상표권자(출원인)는 위 출원인의 상표등록(출원) · 사용에 동의합니다.</p> <p>○ 공존동의를 받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p> <p style="text-align: center;">-</p> <p>(예 : 해당 상품류의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공존동의하는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 25류, 35류 : 전부</p>		

(예 : 해당 상품류의 지정상품 일부에 대하여 공존동의하는 경우)

- 25류 : 모자, 신발
- 35류 : 모자 소매업, 신발 도매업

‘선등록(출원)상표’ 및 ‘선등록(출원) 상표권자(출원인)의 동의에 의해 등록되는 출원상표’는 모두 등록원부에 공존동의와 관련된 등록상표임이 표기되며, 당사자는 이를 확인함.

		년	월	일
선등록(출원) 상표권자 (출원인)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특허고객번호			
	등록(출원)번호			

※ 유의(참고) 사항

- 선등록(출원)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되는 출원상표는 선등록(출원)상표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등록상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 인정되지 않는 공존동의서
 - 조건부 공존동의서(기한 명시, 지역 제한 또는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등)
 - 포괄적 공존동의서(향후 출원되는 출원상표 일체에 대한 동의 등)
 - 선등록(출원)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출원상표의 공존동의서
- 공존동의와 관련된 출원(등록)건이 다수인 경우 다수의 출원(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으며, 각 건별로 지정상품의 범위를 달리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의 뒤쪽의 기재요령 제16호가목11) 및 12)를 각각 같은 목 12) 및 13)으로 하고, 같은 목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또는 제35조제6항에 따른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동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동의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1.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권의 등록번호 또는 선출원상표의 출원번호
2. 출원상표의 출원번호(또는 출원상표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등록에 동의하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범위

4.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권(또는 선출원상표) 및 동의에 의해 등록되는 출원상표는 모두 등록원부에 공존동의와 관련된 등록상표임이 표기된다는 사실의 확인
5.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권자 또는 선출원인의 성명 및 서명(날인)
6. 출원인의 성명 및 서명(날인)

※ 상표공존동의서 작성예시

상표공존동의서		
출원인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특허고객번호	(특허고객번호가 없을 시, 사유 기재)
	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	(출원번호가 없을 시, 상표견본 및 상품류 기재)
<p style="text-align: center;">아래 선등록(출원) 상표권자(출원인)는 위 출원인의 상표등록(출원) · 사용에 동의합니다.</p> <p>○ 공존동의를 받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p> <p style="margin-left: 20px;">-</p> <p>(예 : 해당 상품류의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공존동의하는 경우)</p> <p style="margin-left: 20px;">- 25류, 35류 : 전부</p> <p>(예 : 해당 상품류의 지정상품 일부에 대하여 공존동의하는 경우)</p> <p style="margin-left: 20px;">- 25류 : 모자, 신발</p> <p style="margin-left: 20px;">- 35류 : 모자 소매업, 신발 도매업</p>		
<p>‘선등록(출원)상표’ 및 ‘선등록(출원) 상표권자(출원인)의 동의에 의해 등록되는 출원상표’는 모두 등록원부에 공존동의와 관련된 등록상표임이 표기되며, 당사자는 이를 확인함.</p>		
<p>년 월 일</p>		

선등록(출원) 상표권자 (출원인)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특허고객번호	
	등록(출원)번호	

※ 유의(참고) 사항

- 선등록(출원)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되는 출원상표는 선등록(출원)상표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등록상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 인정되지 않는 공존동의서
 - 조건부 공존동의서(기한 명시, 지역 제한 또는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등)
 - 포괄적 공존동의서(향후 출원되는 출원상표 일체에 대한 동의 등)
 - 선등록(출원)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출원상표의 공존동의서
- 공존동의와 관련된 출원(등록)건이 다수인 경우 다수의 출원(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으며, 각 건별로 지정상품의 범위를 달리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의 기재요령 외의 부분 제1호 표 중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소리·냄새상표의 소리파일 등의 제출란 다음에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신청의 보정란, 국제상표등록출원 분할의 상품보정란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신청의 보정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신청의 보정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을 위한 국제상표의 분할신청서 내용의 취지를 보정하려는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제8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국제상표등록출원 분할의 상품보정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을 위해 분할의 기초가 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중 분할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을 삭제하여 보정하는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제88조의2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신청의 보정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을 위한 국제상표의 분할신청서 내용의 취지를 보정하려는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의 기재요령 제6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국제상표등록출원 분할의 상품보정의 경우에는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의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의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의 기재요령 제8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신청의 보정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신청의 보정의 경우

- 1) 【보정대상항목】, 【보정방법】 및 【보정내용】란에는 각각 해당 내용을 작성하며, 첨부서류(국제등록의 분할 신청서)만 보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작성합니다.

[예]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첨부서류

【보정방법】 제출

【보정내용】

【첨부서류】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국제등록의 분할 신청서(MM22) 1통

- 2)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신청을 위해 분할의 기초가 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보정하는 경우, 【보정 구분】란에서 '□ 국제상표등록출원 분할의 상품보정'을 선택하고, 상기 지정상품 보정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시어 작성합니다. 단, 지정상품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시점에 보정이 완료된 지정상품명을 기준으로 세미콜론(;) 단위의 상품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의 기재요령 제12호가목5)를 6)으로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또는 제35조제6항에 따른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 동의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1.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권의 등록번호 또는 선출원상표의 출원번호
2. 출원상표의 출원번호(또는 출원상표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등록에 동의하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범위
4.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권(또는 선출원상표) 및 동의에 의해 등록되는 출원상표는 모두 등록원부에 공존동의와 관련된 등록상표임이 표기된다는 사실의 확인
5.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권자 또는 선출원인의 성명 및 서명(날인)

6. 출원인의 성명 및 서명(날인)

※ 상표공존동의서 작성예시

상표공존동의서		
출원인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특허고객번호	(특허고객번호가 없을 시, 사유 기재)
	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	(출원번호가 없을 시, 상표견본 및 상품류 기재)
<p style="text-align: center;">아래 선등록(출원) 상표권자(출원인)는 위 출원인의 상표등록(출원) · 사용에 동의합니다.</p> <p>○ 공존동의를 받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p> <p style="margin-left: 20px;">-</p> <p>(예 : 해당 상품류의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공존동의하는 경우)</p> <p style="margin-left: 20px;">- 25류, 35류 : 전부</p> <p>(예 : 해당 상품류의 지정상품 일부에 대하여 공존동의하는 경우)</p> <p style="margin-left: 20px;">- 25류 : 모자, 신발</p> <p style="margin-left: 20px;">- 35류 : 모자 소매업, 신발 도매업</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선등록(출원)상표’ 및 ‘선등록(출원) 상표권자(출원인)의 동의에 의해 등록되는 출원상표’는 모두 등록원부에 공존동의와 관련된 등록상표임이 표기되며, 당사자는 이를 확인함.</p> </div>		
년 월 일		
선등록(출원) 상표권자 (출원인)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특허고객번호	
	등록(출원)번호	

※ 유의(참고) 사항

- 선등록(출원)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되는 출원상표는 선등록(출원)상표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등록상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 인정되지 않는 공존동의서
 - 조건부 공존동의서(기한 명시, 지역 제한 또는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등)
 - 포괄적 공존동의서(향후 출원되는 출원상표 일체에 대한 동의 등)
 - 선등록(출원)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출원상표의 공존동의서
- 공존동의와 관련된 출원(등록)건이 다수인 경우 다수의 출원(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으며, 각 건별로 지정상품의 범위를 달리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지의 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된 상표등록출원, 변경출원, 분할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보정(보완)서

(앞쪽)

- 【보정 구분】** 출원서 등 보정 상표견본의 보정 시각적 표현의 보정
 수정정관(규약) 제출 이의신청서 등 보정 심판청구서 등 보정
 심판청구서 등 보충 절차보완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정관(규약) 등 제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수정정관(규약) 제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소리·냄새상표의 소리파일·냄새견본의 제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신청의 보정
 국제상표등록출원 분할의 상품보정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신청의 보정

- 【제출처】**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제출인】

- 【성명(명칭)】**
- 【특허고객번호】**
-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 【성명(명칭)】**
- 【대리인번호】**
-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이의신청번호, 국제등록번호, 특허청참조번호, 심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보정(보완, 보충, 제출)할 서류】

【보정(보완, 보충)할 사항】

- 【보정(보완, 보충)대상항목】**
- 【보정(보완, 보충)방법】**
- 【보정(보완, 보충)내용】**
- 【보정 전 상품류 및 지정상품】**
 - 【상품류】**
 - 【지정상품】**
- 【보정 후 상품류 및 지정상품】**
 - 【상품류】**
 - 【지정상품】**

(**【 그 밖의 사항】** 재심사청구 지정기간단축신청)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기재요령 제10호 참조)

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12호 참조)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

(앞쪽)

【분할 구분】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국제등록번호】

【국제상표등록출원서의 접수번호】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원(기재요령 제5호 참조)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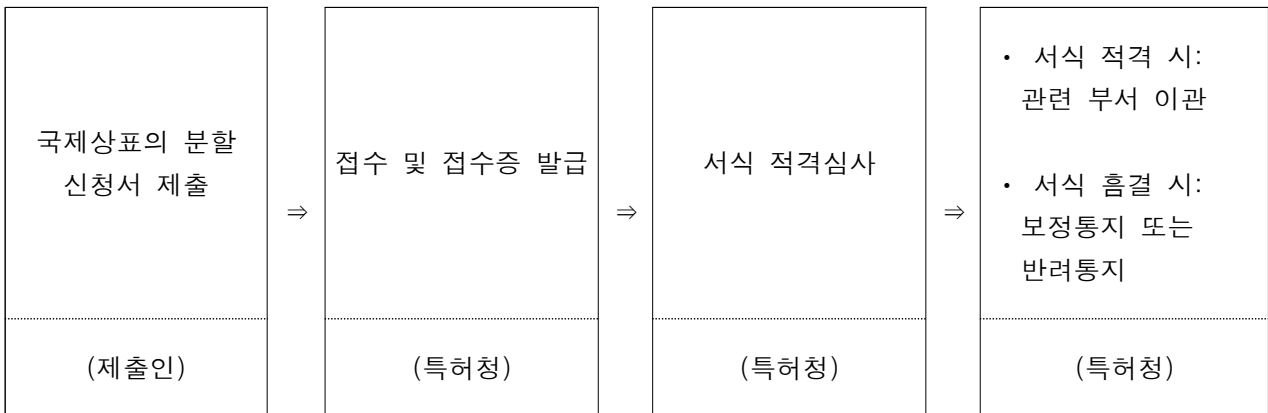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7호 참조)

1. 분할 구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마드리드(Madrid)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분할 구분	내용	관련 규정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을 하려는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제87조의3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등록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을 하려는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제87조의4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분할 구분】란

분할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제출인】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시 적은 영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한글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cm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만큼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다. 공통

- 1) 【사건과의 관계】란에는 “국제출원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 2)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를 적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제출인】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3. 【대리인】란

-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영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대리인번호를 적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 ※ 【지정된 변리사】란에는 대리인 신고 시 적은 영문 성명만을 적으며, 성과 이름 사이에 쉼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 【지정된 변리사】 HONG Gil Dong, KANG Gam Chan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만큼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4. 【사건의 표시】란

서식의 대상이 되는 출원의 【국제등록번호】를 적고, 【국제등록번호】 다음 줄에 【국제상표등록출원서의 접수번호】란을 만들어 국제상표등록출원서의 접수번호를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5. 【수수료】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1조를 참조하여 서식제출 후에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6.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해야 합니다.

7.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국제등록의 분할 신청서입니다.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국제등록의 분할 신청서(MM22) 1통

다.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의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합니다.
-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의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합니다.

라.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제등록의 분할 신청서

(앞쪽)

MM22 (E) – REQUEST FOR THE DIVISION OF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For use by the holder:

Number of continuation sheets:

Statement attached in accordance with Rule 27bis(1)(d)¹ (if applicable, check the box).

Holder's reference:

For use by the Office:

Office's reference:

1. CONTRACTING PARTY OF THE OFFICE PRESENTING THE REQUEST

Name of the Contracting Pa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s to be divided.

2. NAME OF THE OFFICE PRESENTING THE REQUEST

Must be the Office of the Contracting Party indicated in item 1.

3.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International registration to be divided in respect of the Contracting Party indicated in item 1.

4. NAME OF THE HOLDER²

As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1. In accordance with Rule 27bis(1)(d) of the Regulations under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the Office presenting the request, may check this box and include a statement sent in accordance with either Rule 18bis or 18ter for the goods and services listed in the request.

2. Where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s **jointly owned** indicate the names of each joint holder as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here.

5. GOODS AND SERVICES FOR WHICH DIVISION IS TO BE RECORDED

List of the goods and services to be set apart in the divisional international registration, grouped in the appropriate classes.

- If the space provided is not sufficient, check the box and use a **continuation sheet**.

6. SIGNATURE OF THE HOLDER AND/OR THEIR REPRESENTATIVE

Only to be completed by the holder or the holder’s representative if required by the Office presenting the request.

Holder (as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By signing this form, I declare that I am entitled to sign it under the applicable law.

Name:

Signature:

Representative of the holder (before the Office presenting the request):

By signing this form, I declare that I am entitled to sign it under the applicable law.

Name:

Signature:

7. SIGNATURE OF THE OFFICE PRESENTING THE REQUEST

(a) Name and signature of the official signing on behalf of the Office:

By signing this form, I declare that I am entitled to sign it under the applicable law.

(b) E-mail address of the contact person in the Office:

METHOD OF PAYMENT

If you want to debit the amount of the fees from your Current Account at WIPO, tick the box and provide the information under item (a). If you have already transferred those amounts to WIPO's bank or postal account, provide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under item (b), which would allow WIPO to identify and allocate your payment.

(a) INSTRUCTIONS TO DEBIT FROM A CURRENT ACCOUNT

- The International Bureau is hereby instructed to debit the required amount of fees from a current account opened with the International Bureau (if this box is checked, it is not necessary to complete (b)).

Holder of the account:	
Account number:	
Identity of the party giving the instructions:	

(b) BANK OR POSTAL TRANSFER

Identity of the party effecting the payment:	
--	--

Payment received and acknowledged by WIPO	<input type="checkbox"/>	WIPO receipt number	
Payment made to WIPO bank account IBAN No. CH51 0483 5048 7080 8100 0 Crédit Suisse, CH-1211 Geneva 70 Swift/BIC: CRESCHZZ80A	<input type="checkbox"/>	Payment identification	dd/mm/yyyy
Payment made to WIPO postal account (within Europeonly) IBAN No. CH03 0900 0000 1200 5000 8 Swift/BIC: POFICHBE	<input type="checkbox"/>	Payment identification	dd/mm/yyyy

FEE CALCULATION SHEET

AMOUNT OF FEES

The fee is 177 Swiss francs.	TOTAL (Swissfrancs)	=	177
------------------------------	--------------------------------	---	------------

CONTINUATION SHEET

No. of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제1항제1호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법 제180조제1항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의견제출, <u>보정 또는 지정기간 연장신청: 최초로 제출한 의견서, 보정서 또는 지정기간 연장신청서</u></p> <p>3. ~ 5. (생략)</p> <p>③ ~ ⑥ (생략)</p> <p><신설></p>	<p>제2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 <u>보정, 지정기간 연장신청 또는 분할 신청: 보정서,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u></p> <p>3. ~ 5. (현행과 같음)</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u>제26조의2(상표등록 동의서의 제출) ① 출원인이 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상표등록에 대한 동</u></p>

의를 받아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

가. 법 제55조제1항 후단 및 제87조제2항에 따른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

나.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다. 법 제116조에 따른 심판에 대한 의견서 제출(법 제14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및 제147조에 따라 제출하는 의견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

가. 법 제36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

나. 법 제44조에 따른 상표등록 변경출원

다. 법 제45조에 따른 상표등록 분할출원

라.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상표등록 분할이전출원

마. 법 제86조에 따른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바. 법 제205조 및 제206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

3. 법 제116조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 청구서

②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그 내용을 보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2·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기

간

2.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

3. 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6조에 따라 심판
을 청구한 날부터 법 제149조
제3항에 따른 심리 종결의 통
지를 한 날까지

4.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
는 경우: 법 제40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각각의 기간

5.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

제33조(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40조제2항제5
호에서 “제36조제2항에 따른 표
장에 관한 설명 등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을 말한다.

1. ~ 4. (생략)

<신설>

제33조(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 -----

-----.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제59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의 제출) ① 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③ (생략)

제87조의2(소리·냄새상표의 파일 또는 견본의 제출 등) ①·

② (생략)

<신설>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제59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의 제출) ① -----

----- 상표권자(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도 상표권자로 본다)---

----- 제출해야 -----.

1.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87조의2(국제상표등록출원 등 절차의 보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88조의2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또는 제91조의2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특허청장은 제88조의2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또는 제91조의2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보정을 명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제88조의2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또는 제91조의2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에 대하여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 제27조의2(3)에 따라 국제사무국이 하자를 통지한 경우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도록 해야 한다.

제88조의2(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 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신 설>

제41호서식의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분할하려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함께 보정해야 한다.

1.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국제 등록의 분할 신청서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91조의2(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을 지정상품별로 분할하려는 상표권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국제 등록의 분할 신청서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